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5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
주거 충북 청원군
등록기준지 충남 논산시
검 사 송준구(기소), 김윤선(공판)
판 결 선 고 2013. 3.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9. 08:42경 충북 청원군 00읍 0리에 있는 00
읍 제0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지에 기표한 후 휴대전화를 이
용하여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경찰 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투표의 비밀과 공정 선거의 진행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엄격
히 금지되는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사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도형 _____

 판사 이화송 _____

 판사 정혜원 _____